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 별 첨

4. 검 토 의 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12월 17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임 묵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자치구와 사업소에 배분하고, 도시공원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매수사무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시로 환원 하는 등 시·구간 사무의 배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시와 자치구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규위임함(안 별표 2·3).
- 나. 보문산, 세천, 가양, 계족산공원의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,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권한은 환원함(안 별표 2·3).
- 다. 「염관리법」에 의한 염제조업 등에 관한 3개 사무는 염전에서의 허가·취소·청문에 관한 사항으로 염전이 없는 우리시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함(안 별표 3).

- 라. 소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부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(안 별표 3).
- 마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함(안 별표 2 · 3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무에 있어 건설관리본부와 구청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,

소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,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원지정 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 권한을 환원하고,

우리시에서 불필요한 염제조업 등 관련 사무를 삭제하며,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

○ 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

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 사전에 합의가 되었으며, 근거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.